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9. 10. 2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9년 9월 19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19년 9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제2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19. 9. 27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재정국장 김성영)

가. 제안이유

- 도로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의 일관성 있는 행정재산 관리를 도모하고,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구 주요시책을 지원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도로점용허가 대상 개정(안 제2조)
- 도로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규정 정비
  - 변상금 부과·징수 대상자 개정(안 제4조제1항)
  - 점용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시 이자 적용 규정 개정(안 제5조제2항)
- 도로법 등 상위 법령에 기 규정되어 있거나 반하는 규정 삭제
  - 제6조, 제8조, 제9조제1항,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삭제
- 도로점용허가 대상 개정(안 제2조)에 따라 [별표]의 점용료 산정기준 정비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임경태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·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
- 주요내용으로는,
  - 안 제2조에서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  - 안 제3조에서는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였으며,
  - 안 제4조에서는 변상금의 부과·징수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  - 안 제6조, 안 제8조에서는 점용료 등의 조정, 가산금 및 독촉의 중복규정을 삭제하였음.
- 검토결과,
  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적 타당성,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,
  -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보완하여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45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19. 9. .  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도로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의 일관성 있는 행정재산 관리를 도모하고,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구 주요시책을 지원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도로점용허가 대상 개정

- ‘광고탑,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’을 삭제하고,
- ‘신·재생에너지 설비(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」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.)’ 추가(안 제2조)

나. 도로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규정 정비

- 변상금 부과·징수 대상자 개정(안 제4조제1항)
- 점용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시 이자 적용 규정 개정(안 제5조제2항)

다. 도로법 등 상위 법령에 기 규정되어 있거나 반하는 규정 삭제

- 제6조(점용료 등의 조정), 제8조(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), 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를 규정한 제9조제1항, 제12조(수수료의 징수) 제1항, 제2항 삭제

라. 도로점용허가 대상 개정에 따라 [별표]의 점용료 산정기준 정비

- ‘신·재생에너지 설비’는 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로법」, 「도로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- 1) 부패영향평가: 원안 동의
- 2) 인권영향평가: 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
- 3) 성별영향분석평가: 개선할 사항 없음
- 4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(2019. 7.25. ~ 2019. 8.14.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신·재생에너지 설비(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」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)

제4조제1항 중 “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”를 “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71조제3항”을 “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9조의 제목“(점용료 등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)”을“(점용료 등의 반환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.

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유재산법 시행령」 제71조제3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. 다만, 「지방세징수법」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나누어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.

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**제6조(점용료 등의 조정)**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.

<삭 제>

**제8조(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)**

<삭 제>

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다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. 이 경우,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「국세징수법」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9조(점용료 등의 소액 부정수 및 반환)**

**제9조(점용료 등의 반환)**

① 징수하여야 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이 5,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 법 제68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.

<삭 제>

②·③(생략)

②·③(현행과 같음)

**제12조(수수료의 징수)**

**제12조(수수료의 징수)**

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「도로법 시행

<삭 제>

규칙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  
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수수료의 감면은 법 제68조의 규  
정을 준용한다.

③(생략)

[별표]

점용료 산정기준(제3조 관련)

점용물의 종류		기준단위		점용료 (단위:원)
		점용	기간	
1. 영별 표3제 7호에 서정한 점용물	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	점용 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
	노점			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
	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			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
	자동판매기· 상품진열대		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
2. 구청장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·공고·고시한 재래시장 의 차양시설·비가리개 시설·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		점용 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001을 곱한 금액

<삭 제>

③(현행과 같음)

[별표]

점용료 산정기준(제3조 관련)

점용물의 종류		기준단위		점용료 (단위:원)
		점용	기간	
1. 영별 표3제 7호에 서정한 점용물	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	점용 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
	노점			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
	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			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
	자동판매기· 상품진열대		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
2. 영 별표3 제11 호에서 정한 점용물	구청장이 시 장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 하다고 지정 ·공고·고시한 재 래시장의 차양 시설·비가리 개 시설·그 밖 에 이와 유사 한 것	점용 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001을 곱한 금액
	신·재생에너지 설비(서울특 별시 에너지조 례에 따라 설 치하는 경우)			토지가격에 0.01을 곱 한 금액